

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2025년 7월 부터 시행됩니다.

양육비 선지급 제도

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, 자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지원합니다.

지원요건

-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
-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

지원금액

자녀 1인당 월 20만원

지원기간

자녀 만 18세까지 지원

당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함께 신청해보세요!

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

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합니다.

※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2025년 6월까지 지원합니다.

지원요건

- 1 이혼·비혼 등으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,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
-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(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)이 있는 경우
- 3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생계급여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
-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
- 5 다음 ①에서 ⑥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①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
 - ②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거나, 질병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,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
 -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(외)조부모인 경우
 - ④ 난방, 전기,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
 -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
 - ⑥ 양육비 채권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

지원금액

자녀 1인당 월 20만원

지원기간

9개월(필요시 3개월 연장)

면접교섭 서비스

- **면접교섭 중재**
면접교섭에 관한 중재·합의 지원
- **면접교섭 상담**
양육자·비양육자·자녀의 심리상담 및 면접교섭과 관련된 교육
- **면접교섭 모니터링**
지속적, 자발적 면접교섭을 위한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독려 지원
- **집단 면접 프로그램**
비양육자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(상담·교육·체험활동) 제공
※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서 면접교섭서비스 제공

오시는 길



지하철 이용 시

- 충무로역 3호선·4호선 5번 출구 : 도보 4분
- 명동역 4호선 10번 출구 : 도보 6분

버스 이용 시

- 퇴계로3가, 한옥마을, 한국의집 정류장 번호: (02151)
- 간선 104, 105, 140, 421, 463, 507, 604, N16(심야) 지선7011
- 퇴계로3가, 한옥마을, 한국의집 정류장 번호: (02152)
- 간선 104, 421, 463, 507, N16(심야) 순환01



1644-6621

서울시 중구 퇴계로173
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 24층
www.childsupport.or.kr



양육비이행관리원
Child Support Agency

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
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
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함께 합니다.



양육비이행관리원 은?

❖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입니다.

무엇을 지원하나요?

- ❖ 양육부·모(양육비 채권자)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관련 상담, 협의성립, 양육비 소송, 추심,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- ❖ 안정적,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위하여 주기적인 이행 여부 확인, 이행 독려 및 추가 법적조치를 상담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도 지원합니다.
- ❖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❖ 자녀와 비양육부·모의 면접교섭을 지원하며 비양육부·모-자녀 관계개선,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❖ 양육비 관련 홍보·교육·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하여 '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을 위해 꼭 지급되어야 한다'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.



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절차

1. 양육비 상담·접수



양육비 문제에 대한 전화·온라인·방문상담



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류 제출
(우편·온라인·방문)

면접교섭지원 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연계 (※ 자격요건 충족 시)

2.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주소·근무지 조회



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·근무지 파악



양육비 채무자의 소득·재산 파악

3.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



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지원
(인지, 양육자 지정, 양육비 심판청구 등)



이행시 모니터링 지원

불이행시

4. 양육비 추심지원



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



이행시 모니터링 지원

불이행시

5. 제재조치



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
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



이행명령에도 양육비 미지급시
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,
출국금지 요청, 명단공개 지원



고질적 양육비 체납 및
감치 미집행 사례 등에
대한 현장지원반 운영

서비스 신청 대상

-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자녀* 양육 한부모·조손가족
* 취학중인 만22세 미만 자녀,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(만22세 미만 + 군 복무기간) 양육 한부모·조손가족
- ※ 이혼 한부모 뿐만 아니라 비혼 한부모도 지원
- 비혼부·모는 인지청구(자녀와 친부·모의 법률상 부모자 관계 형성)부터 지원

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

- 1 온라인 홈페이지(www.childsupport.or.kr) → 정보공간 → 자료실
- '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' 서식 출력
*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서식(작성 예시문) 참고
- 2 양육비 관련 추가 서류
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(www.childsupport.or.kr)
→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→ 이용대상 → 제출서류
- 3 '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' 및 관련서류 필수 제출 (등기우편, 방문)
(우)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173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

양육비에 관한 상담 방법

- 전화/방문상담 | ☎ 1644-6621(1번)
평일 09:00~18:00(주말, 공휴일 제외)
※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로 운영
- 온라인상담 | www.childsupport.or.kr



※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